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25-31)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 발표

1. 개요

- 일본정부 ‘일하는방식개혁실행회의’ (의장: 아베 총리)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장시간근로 해소 등에 관한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을 3.28 발표하였으며, 일본정부는 금년도 중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9년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임.
- 동 실행계획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아래 9개 항목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함.
 - ①(비정규직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②(임금인상) 최저임금 연율 3% 정도 인상, 시급 1천엔, ③(장시간근로 해소) 잔업시간 상한 설정(위반시 벌칙), 퇴근시간-출근시간 사이 일정한 휴식을 두게 하는 근무간 인터벌 규제 도입(노력의무), ④(이직·재취업 지원) 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⑤(유연한 근로방식) 재택근무(telework) 확대, 겸업·부업 추진, ⑥(여성·청년의 사회참여) 재교육 기회 확충,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⑦(고령자 취업 촉진) 65세 이상 고용유지 및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확충, ⑧(육아 또는 요양과 일의 양립)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 임금 및 처우 개선, ⑨(외국인재 유치) 범정부적으로 종합적 검토 개시

2. 실행계획

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의의

(향후 대책의 기본개념)

- 일하는 방식 개혁은 최대의 도전으로서, 이를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 → 임금상승 → 수요확대 → 경제성장’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이 목표
- 향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장시간 노동 풍토 및 일본의 단선적(團線型) 경력(career path)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중산층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고, 일본의 출생률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

(계획 실행)

- ‘일하는방식개혁실행회의’에서 9개 분야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 하고, 노동자측, 사용자측, 여타 지식인을 포함하여 합의를 형성
-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조속히 심의하고, 정부가 관계 법률안 등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
- 별척부과 초과근무의 상한 규제와 관련, 노사정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제화에 주력할 필요

나. 세부 실행분야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본개념)

- 동일 기업·단체의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무기고용 전일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트직, 파견직)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 해소를 목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각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직무 및 능력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 및 임금제도 등 처우 체계 전체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가이드라인)

- 불합리한 대우 격차의 구체적인 규정이 중요한바, 정부 가이드라인(案)의 대상은 기본급, 임금 인상,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및 복리후생도 포함하는 것이며, 노동자가 불합리한 대우 격차의 시정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

- 기본급은 실태에 차이가 없을 경우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임금인상도 근속에 따른 직업능력 향상에 따라 인상할 경우에는 유사한 직업 능력 향상에 대해 동일하게 인상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에 따른 인상을 요구

- 보너스(상여금)는 동일한 기여에는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복리후생시설 이용, 경조사 휴가 등은 동일한 이용·부여를 요구하는 한편, 파견 근로자와 관련, 사용기업의 근로자와 직무 내용 등이 동일하면 동일수준 임금을 지급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며, 복리후생, 교육훈련의 실시를 요구

(법 개정의 방향성)

○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만이 정보를 보유하여 근로자가 소송을 일으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불합리한 대우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판에서 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

- 법 개정에서는 사업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시 대우 내용 등 본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로 소송을 일으키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바,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을 정비하고, 균등·균형대우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분쟁해결수단을 친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

- 파견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의해 파견처가 바뀔 때마다 임금 수준이 바뀌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하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기업 근로자와의 균등·균형 대우를 요구하지 않을 것

- ① 동종 업무의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과 동등액 이상일 것
- ② 파견 근로자의 경력 형성을 전제로,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임금에 반영시켜 나갈 것

③ 임금 이외 대우와 관련, 파견 기업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의 대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하지 않을 것

(2) 임금 인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

○ 최저 임금 연율 3% 수준을 기준으로, 명목 GDP 성장률도 고려하여 인상할 계획으로, 전국 가중평균이 1,000엔이 되는 것을 목표

- 중소·소규모 사업자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50년 만에 최초로 하청 대금 지불에 대한 통지를 검토

(3) 벌칙 부과 초과근무 상한규제의 도입 등 장시간 노동 시정

(기본개념)

○ 일과 육아·간병을 무리없이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노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꿔 나갈 것으로 기대

(법 개정의 방향성)

○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여 특수 조건을 마련할 경우, 상한 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하나, 현행 후생노동대신 고시(告示)를 법률로 격상하고 벌칙에 의한 강제력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는 상한을 설정

(초과근무 상한규제)

○ 주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한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원칙 월 45 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부과

○ 특별한 임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노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는 근무시간 상한을 연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특례적으로 규정하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연 720 시간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없는 최저 상한선을 마련

- ①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의 평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80시간 이내를 충족할 필요
- ② 1개월의 경우,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100시간 미만을 충족할 필요
- ③ 또한, 초과근무의 한도가 원칙 월 45시간, 연 360시간임을 감안하여, 이를 초과하는 특례의 적용은 반년이 넘지 않도록, 연 6회를 상한으로 설정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power harassment) 대책 등)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는 노사관계자 등과 한자리에서 대책을 검토하며, 정신건강 대책 등의 목표도 검토

(근무간 인터벌)

- 사업자는 전날 퇴근 시간과 다음날 출근 시간 사이에 일정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의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는 노사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 검토회를 설립

(준비 기간 확보 등)

-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급격한 변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까지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며, 법시행 후 5년 경과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시행

(적용 제외)

- 자동차 운전 업무는 벌칙 부과 초과근무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정법의 일반칙(一般則) 기일인 5년 후에 연 960시간(월평균 80시간) 이내의 규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칙의 적용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
- 건설 사업은 벌칙 부과 초과근무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정법의 일반칙(一般則) 시행기일인 5년 후에 벌칙 부과 상한 규제의 일반칙을 적용(다만, 복구·재건의 경우 단월 100시간미만, 2개월 또는 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의 조건은 미적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일반칙의 적용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복수 사업장에서 인정된 기업 등에 대해 전사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명 공표 제도 대상을 복수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위반이 있는 경우 등 까지 확대, 강화

(의욕과 능력 있는 노동자에 대한 자아실현 지원)

- 국회 제출중인 노동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여,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확보하면서 그 의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제도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동 법 개정예 대한 국회 조기 성립을 추진

(4) 유연한 근무 방식이 가능한 환경 정비

- 재택근무(telework)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등과 직장의 양립 수단이 되며, 다양한 인재의 능력 발휘가 가능
 - 부업이나 겸업은 기술 개발, 창업 수단, 제2의 인생 준비에 효과적이거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면 본말전도일 것인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보급을 가속화

(5) 여성·청년 인재 육성 등 활약하기 쉬운 환경 정비

- 고용 보험법을 개정하여 직장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직결되는 전문 교육 강좌의 수강비용에 대해 교육 훈련 지원금을 확충하고, 상한액은 연간 48만엔에서 56만엔으로 인상하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취업 조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배우자 공제 등은 배우자의 소득 제한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인상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피용자 보험 적용 확대의 원활한 실시를 추진

(6) 질병의 치료와 일의 양립

- 현재 노동 인구의 3명 중 1명이 병을 치료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바,

주치의-회사·산업의(産業醫)-환자를 배려한 양립지원 코디네이터 삼각형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불임 치료 지원과 관련, 의료면 뿐만 아니라 취업·양립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실시

(7) 육아·개호(간병·돌봄) 등과 일의 양립, 장애인 취업

- 2017년도 예산에서는 모든 보육사에 대해 2%의 처우 개선을 실시하고,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지 않도록, 보육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육아 휴직 급여의 지급 기간을 최대 2세까지로 연장하고, 개호 직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에서 월 평균 1만엔 상당의 처우 개선을 실시

(8) 고용 흡수력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이직·재취업 지원

-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직·재취업 등 대졸 신입사원 이외의 다양한 채용 기회 확대가 과제인바, 성장 기업이 이직자에게 시행하는 능력 개발과 임금인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신설

(9)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교육 환경의 정비

- 상환이 불필요한 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올해 봄부터 저소득층 자녀와 관련된 성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철폐하고, 유아 교육 무상화의 범위를 확대

(10) 고령자 취업 촉진

- 65세 이상의 계속고용 연장 및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최종적으로 계속 고용연령 등의 인상을 추진

(11) 외국 인재 수용

- 고도 외국인재의 영주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세계 최단 수준인 1년으로 축소하고,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를 신설
- 전문적·기술적 분야로 평가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외국인재 수용은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

다. 향후 로드맵

- 로드맵 연차는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10년간으로 설정

3. 각계 평가 및 반응

가. 勞使政 반응

- 아베 총리는 동 실행계획에 대해 “일본의 근로방식을 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관계 각료에게 조속한 관련법 제출을 지시함.
- 사카키바라 經團連 회장(사측)은 동 실행계획에 근로방식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산업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논의를 거듭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법안 작성 등에 있어서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한편, 중소기업이 대부분 회원사로 참여하는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두(會頭)는 대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여파가 하청업체와의 거래시 개악(改惡)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
- 고즈 連合 회장(노조)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해 낸 점을 커다란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과근무 상한(바쁜 시기 월 100시간 미만)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노사협상에서 사실상 월 45시간이 상한임을 강조해 나갈 생각임을 표명

나. 주요 언론 평가

- 동 실행계획을 통해 그동안 착수하지 못했던 개혁을 진전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일본경제의 성장력 제고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함.(닛케이)
- 인구감소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참여 확대나, 성장산업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고용 유동성 제고와 관련한 논의가 미흡하며, IT 환경

하에서의 재택근무나 겸업·부업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상세 추진방안이 미비

- 또한, 동 실현회의가 9개 항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설계, 임금인상 등 주로 노동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논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혁의 목표를 실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장시간 근로 해소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식 고용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경제계에 주문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요미우리)
- 다만, 동 실행계획 마련 단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장시간 근로 해소(초과근무 규제)’ 관련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마이니치, 아사히)
- 동 실행계획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상한*을 설정
 - * ①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내일 것, ②바쁜 시기에도 월 100시간 미만까지 가능하다, 2-6개월 월평균 80시간 이내일 것, ③월 45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최대 연6회 가능, ④연간 초과근무 상한(바쁜 시기 포함) 연 720시간(월평균 60시간)
- 그러나, ①③④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았고, ②에서 정한 평균 월 평균 80시간이 사실상의 상한이 되어, 연간 최대 960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한바, 연간 약 2천시간(휴일근무 포함)에 달하는 총 근무시간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
- 또한,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설업, 운수업 등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간 유예되므로 일본정부의 계획대로 2019년 동 실행계획 관련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동 분야에 서는 향후 7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마이니치)
- 아울러, 관리감독도 근로자 1만명당 노동기준감독관 0.62명으로 독일(1.89명)이나 영국(0.93명)에 비해 적으며, 퇴근과 출근 사이 일정한 휴식을 확보하게 하는 ‘근무간 인터벌 제도’도 노력의무로 규정하는데 그쳐 노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확대됨.(마이니치)

- 한편, 일본정부의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처우격차를 없애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하나, 장시간 근무를 감축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크게 불충분하여, 장시간 초과근무 합법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음.(도쿄신문)
- 노사가 설정한 초과근무 상한(연간 720시간,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 미만’까지는 가능하나 ‘2-6개월 월평균 80시간 이내’)에서는 휴일 근무를 배제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국 연간 9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바, 목숨 살리겠다고 만든 규정에서 이러한 특례를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
- 또한, 연구개발직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5년 뇌·심장질환 산재인정 건수의 50%를 차지하는 운수업·건설업에 대해서는 최저 5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받게 되는데, 동 분야 인력부족이 이유이나, 그렇다고 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근무방식을 인정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

다. 전문가 평가

- 야마다 히사시 日本總研 조사부장은 노동자 보호정책을 논의하여 법안 개정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 있어서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미네 타카오 法政大 교수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동성 심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

2. 일본 2017년 예산안 의회 통과

1. 2017년도 일본 예산 주요 내용

- 2017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이 3.27 자민, 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수정 없이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음.

- 일반회계 총액은 97조 4,547억엔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연금, 의료, 간병을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2조 4,735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여 전체 일반 회계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북핵 미사일 대비 등을 위해 국방비도 5년 연속 증가하여 최대 5조 1,251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관광청 예산도 역대 최대인 210억엔이 책정
- 중점시책인 1억총활약 관련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조 9,352억엔이 책정되었고,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15조 5,671억엔이 책정
- 2017년도 예상 세수는 2016년보다 1,080억엔 증가한 57조 7,120억엔이며, 신규 국채발행액은 2016년도보다 622억엔 적은 34조 3,698억엔으로 재정의 국채의존도는 35%를 보임.

《일본 2017년도 예산》

구분	2016 예산(A)	2017 예산(B)	증감		
			B-A	%	
세 입	▪ 국세	576,040	577,120	1080	0.2
	▪ 기타수입	46,858	53,729	6,871	14.7
	* 외환특별회계 잉여금 이월 등				
	▪ 국채발행(신규)	344,320	343,698	△622	△0.2
	- 건설국채	60,500	60,970	470	0.8
	- 적자국채	283,820	282,728	△1,092	△0.4
	- 국채의존도	35.6%	35.3%	-	-
합계	967,218	974,547	7,329	0.8	
세 출	▪ 국채비	236,121	235,285	△836	△0.4
	▪ 일반경비	578,286	583,591	5,305	0.9
	- 사회보장비	31,973	32,473	500	1.6
	- 교육 및 과학	5,358	5,357	△1.	-0.0
	- 국방비	5054	5125	71	1.4
	- 공공사업	5,973	5,976	3	0.0.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2,811	155,671	2,860	1.9

2.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정치권)** 여당인 자민당은 2017년도 예산은 최대의 경기 대책으로서 아베노믹스의 추진력이 된다는 평가이며, 공민당은 동 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회복, 급여형 장학금 등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더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한편, 야당인 민진당은 방위비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와 일반회계 규모가 사상 최대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않아 기초재정 수지 흑자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언론)**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2017년도 세수 예상금액이 2016년도보다 1,080억엔 증가에 그친 것은 경기의 제자리걸음을 나타낸 것이며, 국채 발행규모가 622억엔 줄어든 것은 일부 늘어난 세외수입 활용에 따른 것으로 재정건전화 차원은 아닌 것으로 관찰

- 특히 향후 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과 교육 및 방위비 세출 증가 압력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로 2019.10월 소비지 인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감안하면 2020년 기초재정 수지 흑자 달성 목표는 요원할 가능성이 우려*

* 내각부의 2017.1월 시산에 의하면 명목 3%이상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8조3천억엔(GDP대비 1.4%)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2017.3월 일본경제동향(내각부 설명회)

I. 개요

1. 일본경제 동향

- **(3월 일본 경제에 대한 총괄 판단)**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하여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과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등으로 고용 및 소득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며, 해외경제의 불안정과 금융 및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함.
- **(민간소비)** 2월의 경우 식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3월에는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사업투자) 사업투자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2월의 평가를 그대로 유지
- (수출)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2월의 평가를 그대로 유지
- (산업생산) 산업생산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2월의 평가를 그대로 유지
- (기업수익) 1월에는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수익이 잠시 정체되었다가 2월에 회복세를 보였는바, 3월에도 회복세가 있다는 2월의 평가 유지
- (사업환경에 대한 기업판단) 현재의 사업환경이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는 2월의 평가를 그대로 유지
- (고용여건)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2월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 (물가) 물가상승이 정체되어 있다는 2월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 (일본정부 경제정책 입장) △디플레이션 탈출,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 확립이라는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일하는 방식 개혁(3.28 구체적 방안 확정 발표) 등 성장 잠재력을 재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

2. 분야별 구체적 지표

- (GDP) 2016년 4/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3%(연율 1.2%)를 보였고, 동기간 명목 GDP는 전기대비 0.4%(연율 1.6%)를 기록하였으며, 실질 GDP,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3개 모두 3년 연속 플러스를 시현하고 있음.

《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전년동기비, %)》

	2013	2014	2015	2016
명목 GDP	1.7	2.1	3.3	1.3
실질 GDP	2.0	0.3	1.2	1.0
GDP 디플레이터	△0.3	1.7	2.0	0.3

- 2016년 국민총생산은 537.3조엔으로, 버블경제 peak이면서 아시아 외환위기때인 1997년 일본 국민총생산 534.1조엔을 능가하는 역대 최고치로서,

이제 일본경제는 20년 디플레 터널의 끝에 왔다고 볼 수 있음.

- (민간 소비) 날씨 등의 영향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제어한 측면도 있으나, 노동시장이 tight(구인건수>구직자)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지출 중 식비지출이 차지하는 Engel 지수도 최근 몇 년간 고조세를 보이는 등 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주택건설) 도쿄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실률 증가 등으로 주택건설은 담보 상태임.
- (공공투자) 정부의 추경예산이 60% 정도의 지출 진척을 보이는 등 탄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 고용시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취업자수는 2012년 대비 170만명이 증가하였고,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인구도 2012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017.1월 3.0%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기업수익) 제조업부분 및 비제조업부분 모두 2016년 들어 전기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조업분야의 경우 운송, 화학, 에너지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의 경우 도매업 분야가 전체 기업수익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
- 한편, 기업수익여건과 관련있는 원자재 가격의 경우 2017년 들어 상승세이며 엔/달러 환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이다 2017년 들어 115엔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
- (산업생산) 화학과 화장품 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바, 이는 외국 관광객이 일본을 찾아 일본 화장품을 사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을 하면서 국내소비 및 수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수출/수입) 전체적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對아시아 수출이 크게 늘고 있고, 수입도 반등세인바, 미국으로부터의 셰일가스 수입 등이 늘고 있음.

- **(국제수지)** 무역·서비스 수지는 2011년 이후 적자가 되었지만 2016년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음.

- 경상수지의 경우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그 내역을 보면 과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컸으나 최근에는 이자, 배당 등의 제1차 소득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음.

- **(물가)** 종합지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core CPI(신선식품, 에너지 물가 제외)의 경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향후 노동시장이 tight한 관계로 택배 등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이 상승하여 core CPI 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3. 관광

-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크루즈 및 비행기 운항을 늘리는 한편 면세점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 관광 진흥정책을 실시한 결과 2016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역대 최고치인 2,400만명으로서 2012년 836만명의 3배 수준이며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많이 왔음.

- 면세점의 숫자의 경우 2013.4월 4,622개 였으나 2016.10월 38,653개로 8.3배나 늘었음.

-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은 2012년 1.1조엔에서 2016년 3.7조엔으로 늘었음.

4. 여성 노동력

- 아동보호센터를 대거 확충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여건을 개선한 결과, 2012년보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었으며 직장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2012년 6.9%에서 2016년 9.3%로 늘었음.

4. 환율/주가

	3.27(월)	3.28(화)	3.29(수)	3.30(수)	3.31(금)
환율(엔/달러)	110.65	111.12	111.03	111.89	111.38
환율(원/100엔)	1,006.31	1,009.02	1,005.01	1,004.18	999.64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8,985.59	19,202.87	19,217.48	19,063.22	18,909.26
장기금리(%)	0.055	0.060	0.055	0.060	0.065

- **(엔/달러 환율)** 도쿄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견해 등이 확산되어 엔화 매도·달러 매입이 이어지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보였으나, 여전히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 움직임은 소폭에 그침.

- **(닛케이평균주가)** 엔화약세·달러강세 기조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 및 에너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실적 악화를 우려한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각이 진행되어 19,000엔을 하회하며 장 마감

- 다만, 3.31로 2016 회계연도가 종료된바, 회계연도 기준 닛케이지수가 2년만에 상승(12%) 마감하였는데, 이에 대해 작년 가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가상승, 엔화약세·달러강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실적개선에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증시 매입세 확대 등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

3 기타

5. 영국의 EU 이탈 정식표명 관련 일본 반응

1. 일본정부 대응

가.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 스가 관방장관은 3.29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EU 이탈 절차를 개시한바, 현지 진출 일본기업 지원을 위한 일본정부 TF 소집 방침을 밝힘.
- 동 TF는 하기우다 관방부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협상 상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EU 이탈이 일본기업의 사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큰 관심이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함.

나. 경제산업성 의견교환회의 개최

- 경제산업성은 영국의 EU 이탈 정식표명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9 영국 진출 일본기업(닛산, 히타치, 경단련 등 13개 기업 및 단체 참석) 관계자들과의 의견교환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영국과 EU의 협상 결과, EU와의 교역시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절차가 복잡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영국의 EU 이탈 후 영국과 EU의 규제가 서로 달라 일본기업의 비용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 및 영국의 EU 이탈까지 충분한 ‘이행기간’ 확보 필요성도 제기됨.
- 또한, 일본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영국 및 EU에 전달한 일본의 요청사항이 영국-EU간 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촉구해 줄 것에 대한 요청도 제기
- 이와 관련, 세코 경산대신은 “영국의 EU 이탈은 전세계 통상 및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여 노력을 촉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하는 한편, “(일본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2. 기업 반응

-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3.29 기자회견에서 “영국에는 1,200개사 이상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영국의 EU 이탈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국과 EU의 시장 단일화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한편,
 - 일본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지금의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가겠다면서 근시일내에 영국정부와 EU 양측에 일본 경제계가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표명

(금융업)

- 일본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영국에서 금융업 영업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영-EU간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용되던 ‘싱글패스포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EU 역내 국가에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일 금융기관 중에서는 유럽지역 주요거점 재검토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 영국 현지법인의 면허를 사용중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유럽지역 여타국에도 본부 기능을 가진 거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등을 염두

(제조업)

- 제조업 분야의 경우 영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독일, 프랑스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바, 영국의 EU 이탈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철수 등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도요타는 영국 내 공장에서 조립하는 약 20만대 중 75%를 유럽 대륙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올 3월 영국 내 공장에 2.4억파운드(약 340억엔) 이상을 신규 투자하여 생산설비를 강화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함.
- 영국의 EU 이탈로 향후 유럽 각국과의 교역시 관세 부과 우려가 있으나, 영국내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
- 닛산도 2016.10월 영국 내 공장에서 SUV 차량(캐시카이) 후속모델

생산을 발표하였으며, 혼다도 영국 공장 사업전략 변경 예정 없이, 올해 중반경 신형차 생산 개시 예정

3. 언론 반응

가. (요미우리신문 사설) 협상 로드맵 조기 제시가 필요

- 영국의 EU 이탈 협상 대상항목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양측의 의견차도 크며, 난항이 예상된다.
- 영국의 미지급 분담금 및 영국 거주중인 EU 가입국 국민의 체류자격, 영국-EU 가입국간 국경관리 문제 등 난제가 산적
- 한편, FTA 협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여 2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바, FTA 협상 개시가 늦어져 영국 이탈 후의 영국-EU 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됨.
- FTA를 체결하지 않은 채 이탈하게 되면, WTO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통관절차가 부과되어 영국-EU 양측에 통상 부담이 증가할 것인바, 이행조치의 도입이 필수적
- 향후 영국-EU관계의 불투명성은 영국에 진출한 일본 등 외국 기업에도 우려사항

나. (아사히신문 사설) 건설적인 관계 창출 필요

- 영국의 EU 이탈로 인해, 국제공조를 구축해온 EU의 후퇴가 우려되나, 동 이탈은 영국 유권자들의 민심인바, 영국-EU 쌍방은 국제질서의 혼란을 막고 시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특히, 무역 및 국경관리, 체류자격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시나리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함.
- 갑자기 관세가 부활하고, 영국-EU 쌍방에 거주하는 4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체류자격을 잃게 되면 경제 및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 쌍방은 격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행기간 설정 및 이탈 후의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협의를 서둘러야 하며, 오히려 테러방지, 온난화 대책, 세계 빈곤 해소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연계 심화 등 건설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다. (마이니치신문) 협상 결렬을 피하는 것이 중요

- 이탈 협상은 기한은 2년이나, 유럽의회 등의 승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 1년 반도 남지 않았으며, 취급 대상 분야는 통상, 이민, 사법,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하고 양측의 의견차도 크며,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 그러나, 협상 중간에서 결렬되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협상 기한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바, 양측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라. (산케이 신문 기사) 일-EU EPA에는 순풍

- 영국의 EU 이탈 공식선언에 따라, EU측은 역내 결속 확인을 위해 일-EU EPA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바, 이는 일본이 동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영국의 EU 이탈 및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주의로 인해, EU는 가입국의 연대 및 자유무역 추진을 재확인할 필요성 고조
-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의 메가 FTA성립은 EU의 구심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절호의 안전인바, 금번 영국의 EU 이탈은 일-EU EPA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6. 일본 재무성 국제시장 특별 참가자 제도 변경 검토

1. 국제시장 특별참가자 제도 변경 계획

- 일본 재무성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채시장 특별참가자(프라이머리 달러) 제도*가 국채 완전 소화에 부족하다고 보고 현행 특별참가자의 4% 의무 응찰비율을 5%로 올리는 대신 특별참가자가 우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가격경쟁 입찰 비율을 현행 발행물량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2017.3.22, 국채시장 특별참가자회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채시장 특별참가자제도는 국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재무성이 2004년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2개의 메가뱅크(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와 대형 증권사 19개 등 총 21개 참가자로 구성

- 이들 업체는 국채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재무성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반면, 매번 입찰에 부쳐질 국채 발행물량의 4% 이상을 각각 응찰하면서 연간으로는 단기국채 이외의 경우에는 발행물량의 1% 이상 낙찰이 의무화

2. 국채시장 특별참가제도 변경 검토 배경

- 현재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하여 국채 이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국채 입찰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낙찰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었으며 이 국채를 만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됨.
 - 특히, 중도에 매매 차익을 구하는 증권사와 달리, 안정성 차원에서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 은행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 하며, 이러한 이유로 2016.7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응찰의무에 대해서 주주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채시장특별참가자 자격을 반납한 사례가 있음.
- 현재 각 국채시장 특별참가자의 의무가 발행예정금액의 4%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론상으로 21개 금융기관이 전부 4%씩을 응찰할 때 발행 국채의 84%밖에 소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21개 참가자를 감안할 때 응찰의무를 5% 수준으로 올려야 비로소 이론적으로 발행 물량의 100% 소화가 가능하게 됨.
 - 한편, 응찰책임의 제고에 맞추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국채시장 특별참가자가 사실상 우대가격(입찰의 평균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낙찰가격보다 낮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가격경쟁 입찰 발행한도를 현재 전체 발행물량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3. 국채시장 특별참가자의 의견

- 재무성 주관 국채시장 특별참가자회의(3.22)에서 대부분 참가자들은 국채의 안정적 소화를 위하여 특별참가자의 응찰책임을 4%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비가격경쟁 입찰 발행한도를 10%에서 20%로 늘려 주는 것에 대하여 환영

4. 평가 및 전망

- 현재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yield curve control 차원에서 대량 매입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시 발행액보다 2-3배의 응찰이 있을 정도여서 국채시장특별참가자의 의무 응찰 비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물량이 줄어들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물량의 일정비율을 응찰해야하는 국채시장 특별참가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음.
- 특히,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산 관리운영상 매매차익 보다는 만기보유를 통한 채권 이자수익이 필요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과 ‘미즈호은행’ 의 경우 계속해서 부담을 갖게 되어 2016.7월 국채시장 특별참가자의 자격을 반납한 ‘미쓰비시도쿄UFJ’ 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7.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감소

1.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지난 결과 대비 감소

- 2016.4월 현재 일본의 장기요양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이하 동 시설) 입소 대기자가 36만 6,100명으로 지난 조사(2013.10월) 결과에 비해 30% 감소

- 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要介護 3-5’)인 동 시설 대기자는 29.5만명이며, 이 중 재가(在家)요양중인 사람이 42%(12.3만명)이고, 노인보건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여타 시설 입소자가 58%(17.2만명)로 집계
 - * 요양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오름차순 순으로 증세가 심함
- 일본정부는 ‘1억총활약사회’의 일환(‘간병(介護)이직 제도’)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요양시설을 약 50만명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바, 후생노동성은 동 시설 입소 대기자의 전년대비 감소에 대해 요양시설 확충 및 재가요양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
- 그러나, 동 시설 대기자 감소에 대해 사회보장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감안하여 일본정부가 2015.4월부터 요양등급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만 원칙적으로 동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
- 동 시설 입소기준 강화와 함께 낮은 요양등급(1,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치매, 지적장애, 학대 우려 등으로 재가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1,2등급 환자의 시설 입소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존재
- 아울러, 시설확충 관련, 일부에서는 인력부족 및 요양수가 인하 등으로 인해 시설확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 요양서비스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종사자 부족과 관련, 일본의 관련법인(‘복지의료기구’)이 2016년도에 전국의 동 시설 3,36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361개 시설 중 약 10%에 해당하는 43곳에서 입소자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
 - 또한, 2015년도에 요양서비스 분야 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요양수가(‘介護報酬’)가 인하되어, 채산성 악화를 전망한 사업자들이 시설확충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

2. 동 시설 관련 향후 전망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2040년대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하회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
 - 또한, 후생노동성이 2016년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요양 필요시 ‘동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견은 6.9%인 반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자택에서 요양하겠다’ 및 ‘가족에 의한 자택요양’이라는 응답이 약 70%로 집계된바, 향후 24시간 방문요양, 간호 등 서비스가 확충된다면 동 시설 입소 희망자가 감소할 가능성

/끝/